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부전물 내 광고시설물 신규 제작·설치(이하 “공사”라 한다)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가. 신규광고 제작·설치에 있어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나.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중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 1) 전기 관계 법령(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술기준, 전기공사업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 2) 기타 관련법령(공업표준화법 및 KS 규격 등)
- 3) 산업안전보건법
- 4)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 5)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6) 옥외광고시설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7) 감독지시

3. 사업물량

광고종류	규격(mm)	수량(점)	비고
계		40	-
출입구 와이드칼라 광고	2400 x 1800	8	8번 출입구 1점 공익면 사용
벽면 와이드칼라 광고	2000 x 1500	1	
	1500 x 2000	1	
사각기둥 광고	2400 x 750(4면)	4(16면)	
	2450 x 800(4면)	8(32면)	
캐노피 광고	2500 x 1400	8	
	2450 x 1650	1	
벽면 안내판	300 x 600	9	

4. 광고시설물 설치사양

가. 프레임: 철재류 등(스텐레스 스틸, 갈바륨판 등) ▷ 철재재질 이외의 경우 공단과 협의

나. 두께: 5cm 이하

다. 광고물 외부카바 (난연재 동등이상 사용)

- 1) 소형와이드 및 기둥광고시설물 : PC(Poly Carbonate)
- 2) 대형와이드: 플렉스 칼라

라. 전구: 고효율등(LED등)

마. 기타 비조명광고의 경우 불연재질 등 사용

5. 광고시설물 제작설치 시행 계획서 제출

가. 공사시행에 있어 낙찰자(이하 “낙찰자”라 한다)는 광고시설물량을 2017.2.28.까지 광고시설물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공사착공 전에 다음 사항을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지하도상가사업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기한 내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공사 계획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1) 착수계
- 2) 설계도서(제작도면, 시방서 등)
- 3) 예정공정표
- 4) 기타 감독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6. 감독원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공단에서 지정한 직원을 말하며, 본 공사에 관련되는 감독원의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7. 현장대리인

가.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 수행에 정통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적정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감독의 허락 없이 현장을 떠날 수 없다.

라. 현장 대리인은 공사 현장의 관리, 재해방지, 관계서류의 작성, 각종검사의 입회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본 공사 현장대리인의 이동이 있을 때에는 교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하여야 한다.

8. 공사지시

설계서와 시방서 및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9. 지시사항의 준수

가. 낙찰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야 할 의무를 갖는다.

나. 감독원의 공사 규정상 필요한 지시사항은 낙찰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이때 작업자는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0. 종사원의 자격

낙찰자가 고용하는 공사 종사원의 부적당한 행위 또는 기능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감독원이 부적격하다고 판정 시에는 즉시 이를 시정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11. 공사 완성의 의무

가. 낙찰자는 관계법령, 설계도서 및 시방서, 공단 계약서 등에 따라 책임을 가지고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본 공사 시행중 도면 및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공사 시공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시행에 있어 설계대로 시공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 안전관리 및 피해처리

가. 낙찰자는 공사현장 안전 관리 시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공사 시행에 있어 항상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낙찰자가 민사상, 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민사상, 형사상 등의 책임 부담은 물론 낙찰자는 지체 없이 현물변제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하고 공단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 공사의 성질 및 필요에 따라 공사현장에 규정의 공사내용(공사개요, 목적, 기간 등)을 알리는 안내판 및 위험 표지판, 야간 보안등 등을 설치하여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반 경비는 낙찰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라. 낙찰자는 안전관리 수칙 및 전기공사 안전수칙에 따라 사용인 및 종사원에 대한 재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철저히 주지시키고 안전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바. 낙찰자는 공사 시행중 공단 또는 제3자의 타 시설물 등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며, 피해가 있을 경우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13. 사고 및 재해 방지 대책

가. 낙찰자는 안전수칙 이외에 감독원과 안전에 대한 협의 등으로 재해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나. 낙찰자는 작업 전 작업 내용, 시공방법 등을 종사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는 시공도중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수칙의 제반이행 사항을 충실히 지키도록 종사원에게 반복 교육을 실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감독원 및 안전관리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라. 낙찰자는 종사원이 행하는 모든 작업이 충분히 밝은 상태에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 마. 낙찰자는 사고발생 시의 대책 및 관련기관(공사, 병원, 경찰, 소방서등)의 연락 방법 등을 종사원에게 주지시킴은 물론 작업장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 하여야 한다.

14. 공사 시행

- 가. 낙찰자는 본 공사와 관련되는 타 공사 수급인과의 상호간에 긴밀한 연락과 협의로 공사시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공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나. 낙찰자가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공사를 임의로 지연 또는 소홀히 한다고 판단 될 때에는 감독원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감독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의 내용 및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 다.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각종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제반 법정 수속은 낙찰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추진된 내용은 감독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라. 낙찰자는 착공 전, 공사 시행중 공종별 및 주요 사항에 대하여 착수 전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에 따른 하자 및 시설물에 대한 손상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 마. 공사에 필요한 조사, 측량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바. 낙찰자는 착수에서 완료까지 공사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의 기록을 낙찰자의 책임 하에 빠짐없이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사. 공사 시행중 이거나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작업구간에 대한 정리정돈 및 청소를 깨끗이 하고 오물을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 아. 낙찰자는 공사 시공 시 지장되는 시설물은 감독과 협의하여 해체, 제거할 수 있으나, 그 비용은 낙찰자의 부담으로 하며, 파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현품 배상 복구하여야 한다.

15. 시공의 확인 및 입회 검사

낙찰자는 본 공사 중 감독원으로부터 특별히 지시받은 작업과 다음과 같은 공사를 시행 할 때는 감독원의 확인 및 입회 검사를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 가. 준공 후 외부에서 점검이 곤란한 작업.
- 나. 공사 재료의 조합 및 시험.

다.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험.

16. 품질관리

가. 지하도상가 이용객 통행관련 품질관리

- 1) 일일 작업량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인원을 투입하고 신속히 작업이 완료되도록 하여야 한다.
- 2) 작업이 진행 중이더라도 지하도상가 운영상 상가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현장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 3) 어떠한 경우라도 지하도상가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을 끼쳐서는 안 되며, 이로 인한 피해는 낙찰자 부담으로 한다.
- 4) 작업철수 시는 상가 이용객의 통행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마무리 정리 작업을 철저히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검사

낙찰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현장검사 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사 또는 확인을 받아 이상이 없다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자재관리 준수사항

1) 사용자재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KS 표시 허가품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KS 표시 허가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한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운반

가) 철재 류 등은 지상으로 끌거나 던지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후크 또는 기타 운반기구에 의한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반하여야 한다.

나) 기타 자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파손되지 않도록 하여 운반 하여야 한다.

다) 중량물 운반 시에는 특히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며, 타 시설물에 파손이 없도록 하고 타 시설물을 파손 또는 자재운반으로 인한 손상 시는 이에 대하여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7. 내부전기시설 및 수전공사

가. 자재는 KS 표시 허가품을 사용하고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나. 전선은 반드시 난연케이블(예: F-CV케이블) 동등 이상으로 용량에 적합한 굵기를 사용하고, 접지선을 간선에 포설할 때 같이 분전반에서 모든 전기기계 및 기구에 접지시킬 것(접지선의 경우 간선은 F-GV 전선을 사용하고, 분기회로의 경우 HIV 전선 사용)

다. 케이블 및 전선(HIV)은 강제전선관으로 보호하여 시공

(케이블 트레이 이용시는 제외)

- 라. 분기회로는 사고예방을 위해 누전차단기를 사용하고 외함설치
- 마. 누전차단기 외함 접지시공
- 바. 콘센트는 접지콘센트를 사용하고 접지 플러그를 사용하여 반드시 전기기기 본체에 접지할 것
- 사. 부득이한 외부 노출배관 부분은 스텐강관(스텐파이프)혹은 강제전선관으로 시공하고 견고히 고정하여 미려하게 처리한다.
- 아. 전원인출은 지정한 곳에서만 반드시 인출

18. 완료검사 등

낙찰자는 광고시설물 설치완료 시 기일 내에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 입회하에 완료검사를 받아야 한다.

- 1) 완료계(전·후 사진 CD 등 포함) 1부.
- 2)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1식.

19. 기타

본 지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지방서의 내용에 쌍방 간에 의견 및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 협의에 의한다.

- 붙임 1. 부전물 상업광고 광고시설물 설치현황 및 위치도 1부
2. 광고물 등 설치 및 운영 시 유의사항 1부. 끝.

부전몰 상업광고 광고시설물 설치현황 및 위치도



광고종류	규격(mm)	수량(점)	비고
계		40	-
출입구 와이드칼라 광고	2400 x 1800	8	8번 출입구 1점 공익면 사용
벽면 와이드칼라 광고	2000 x 1500	1	
	1500 x 2000	1	
사각기둥 광고	2400 x 750	4(16면)	
	2450 x 800	8(32면)	
캐노피 광고	2500 x 1400	8	
	2450 x 1650	1	
벽면 안내판	300 x 600	9	

광고물 등 설치 및 운영 시 유의 사항

□ 광고물의 설치기준

- 광고물은 벽면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설치하고 광고물의 모서리는 직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물을 설치할 때에는 국토해양부령 제456호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또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 여부
 2.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여부
 3. 시민 통행 및 교통소통 등에 지장 여부
 4. 제작설치 및 유지관리 방안 수립
 5. 지하도상가 관련 법령에 위반 여부
 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계약자”가 지정한 장소에 한해 “계약자”의 승인 및 법적인 절차를 득한 후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광고시설물 및 전기시설(안정기, 누전차단기 등 포함)을 설치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상가시설물 개보수 및 공익목적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설치위치 조정 또는 타 장소로 이설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광고시설물 제작 설치 시 “계약자”는 공사감독자를 지정하여 제작설치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광고시설물 설치 완료 시에는 재질, 규격, 부착상태 등에 대한 외관검사를 “계약자”가 시행하여 검사결과 이상이 없어야 한다.
- 광고물 게·폐침 및 광고시설물 설치 시 “계약자”에 사전통지(작업승인원 및 제작도안 사전 제출) 및 “계약자”의 승인을 득한 후 지하도상가 내 점포 운영시간이 종료된 후부터 운영 개시되기 전(22:00~익일09:00)까지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후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하여 상가 이용객의 보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재질

- 광고물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의 불연재료 또는 동규칙 제7조의 준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 래핑광고 시 광고물 재질로 국가공인기관의 광고물 재질시험(ISO 4589-2:불연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의한 산소지수 24이상 제품 또는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염제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조, 제6조에 의한 시험방법의 방염성능기준을 득한 난연성재질의 리무벌 접착식 시트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한국소방검정공사의 시험성적서(방염필증) 및 사용자재 내역서 등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계약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광고물의 재질과 관련하여 현행보다 우수한 불연성, 난연성 등의 재질이 개발되어 정부시책에 따라 화재 등에 대비한 교체지시로 “계약자”가 광고물 등의 재질교체를 통보할 경우 즉시 응하여야 하며, 재질 교체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하되 이로 인한 광고료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없다.

□ 광고물의 내용과 표기

- 광고물의 도안, 표현 등을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광고물의 도안, 표현은 광고물 부착 전에 “계약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광고표기 위치는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승인한 지정 광고면을 이용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광고대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와 광고주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제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계침 광고물의 관련법령 등에 정한 관계기관의 허가, 신고 기타 심의 등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광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등의 입증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진다.
- 광고물 설치·운영에 따른 이용객 및 고객민원 발생 시 “계약자”는 해당 광고물에 대하여 철거 등을 지시할 수 있다

□ 광고물의 계침 금지대상

- 술, 담배 등 소비 촉진을 권유하는 내용
- 각종 안내표지와 유사하거나 그 효용을 방해하는 형태의 내용
-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내용
- 관련 법률이나 국가시책에 반하는 내용

- 여론 분열 조장의 소지가 있는 내용
- 특정 종교단체를 권유·강요 및 정당 등 홍보하는 내용
- 다수 대중이 선정적인 내용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미지 홍보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광고물

【 광고물 관련 법령 및 기준 】

-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부산시설계약자 광고물 등 설치 및 관리·운영규정